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명백한 부상 동물 제외한 칠현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법을 제19665호했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가축의 인정절차 및 방법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 새로이 정해졌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본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 주요 내용

가. 도축장 밖에서 도살·처리한 기립불능 가축의 식육에 대해 식용으로의 사용·판매허용 규정을 삭제(안 제5조)

도축장 밖에서는 모든 기립불능 가축에 대해 식육에 제공할 목적의 도살·처리 등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도축장 밖에서 죽은 도살·처리한 기립불능 가축의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판매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삭제한다.

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5조의2 및 별지 1호의2서식)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의 사용·판매를 금지하고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립불능 가축이 그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 가축으로 판단되는 기립불능소가 발견된 경우 가축의 소유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군·구청장은 검사관 등에게 기립불능의 원인, 치료 경력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개업수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대상 가축인지를 판정하며, 도축장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는 검사관이 도축검사 결과를 근거로 대상 가축인지를 판정하고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다.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사체를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과 기준 마련(안 제24조 및 별표 9)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사체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처리방법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사체도 비료·사료의 원료 등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료관리법’에서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

라.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10)

현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는 일반 정육점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포장육 등을 추가 가공(절단·포장) 없이 그대로 유통만 하는 경우 해당 영업을 하는데 필요치 않은 시설을 영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포장육 등을 추가 가공(절단·포장) 없이 그대로 유통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시설을 생략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한 가축의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한 것으로서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립불능소가 발견된 경우 그 가축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

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검사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부상·난산·산욕마비 및 급성고창증 이외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상태 인지하고 그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의 사용·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는 가축(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소속 검사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공수의에게 신고 받은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기립불능증상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증상이 치료될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한 결과

2.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해당 기립불능소에 대해 진단 또는 치료를 행한 후 기립불능증상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증상이 치료될 가능성 등을 기록하여 발행한 진단서

③ 도축장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소속 검사관은 해당 기립불능소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별표 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에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제5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 제24조 중 "축산물을"을 "축산물 및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사체를"로 한다.

• 제35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9 제6항 중 "검사불합격품의"를 "검사불합격품 등의"로 하고, 제1호2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나목 후단에 "다만,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도축금지 대상 기

립불능소의 사체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를 사료 또는 사료 등의 원료로 용도전환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가외2.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사체 및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의 사체, 다만,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는 제외한다.

• 별표 10 제6호 가목(1)가와 같은목 (1)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목 (2)중 '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등'을 '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나와 같은 목 (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와 백화점·마트 등의 내부에 있는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 (2)를 준용한다. 다만, 포장육·수입식육 등을 가공(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작업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영업장에는 식육, 포장육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전기냉동시설·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육·수입식육 등을 가공(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를 한 시·군·구에 위치한 축산물보관업의 전기냉동시설·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식육, 포장육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진기냉동시설·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 또는 설치해야 한다.